◎ 해운대 실버홈 일반 이용료 (2025.01.01.기준)

구분	금액	단위	산출내역
장기요양 1등급	786,520	28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 20% × 28일 = 506,520원 - 식 비 3,000원 × 3식 ×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842,700	30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 20% × 30일 = 542,70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870,790	31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 20% × 31일 = 560,79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장기요양 2등급	749,890	28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 20% × 28일 = 469,890원 - 식 비 3,000원 × 3식 ×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803,460	30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 20% × 30일 = 503,46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830,240	31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 20% × 31일 = 520,24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	723,740	28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 20% × 28일 = 443,740원 - 식 비 3,000원 × 3식 ×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775,440	30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 20% × 30일 = 475,44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801,280	31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 20% × 31일 = 491,28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12%

◎ 해운대 실버홈 감경/의료수급자 이용료 (2025.01.01기준)

구분	금액	단위	산출내역
장기요양 1등급	583,910	28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x 12% x 28일 = 303,91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625,620	30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 12% × 30일 = 325,620원 - 식 비 3,000원× 3식 ×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646,470	31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 12% × 31일 = 336,47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장기요양 2등급	561,930	28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 12% × 28일 = 281,93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602,070	30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 12% × 30일 = 302,070원 - 식 비 3,000원× 3식 ×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622,140	31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 12% × 31일 = 312,14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	546,240	28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 12% × 28일 = 266,24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585,260	30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 12% × 30일 = 285,260원 - 식 비 3,000원× 3식 ×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604,770	31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 12% × 31일 = 294,770원 - 식 비 3,000원 × 3식 ×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8%

◎ 해운대 실버홈 감경/의료수급자 이용료 (2025.01.01기준)

구분	금액	단위	산출내역
장기요양 1등급	482,600	28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x 8% x 28일 = 202,60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517,080	30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x 8% x 30일 = 217,08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534,310	31일	- 본인부담금 90,450원 x 8% × 31일 = 224,31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장기요양 2등급	467,950	28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x 8% x 28일 = 187,95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501,380	30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x 8% x 30일 = 201,38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518,090	31일	- 본인부담금 83,910원 x 8% x 31일 = 208,09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	457,490	28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x 8% x 28일 = 177,49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28일 = 252,000원 - 간 식 비 1,000원 × 28일 = 28,000원
	490,170	30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x 8% x 30일 = 190,17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30일 = 270,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0일 = 30,000원
	506,510	31일	- 본인부담금 79,240원 x 8% x 31일 = 196,510원 - 식 비 3,000원 x 3식 x 31일 = 279,000원 - 간 식 비 1,000원 × 31일 = 31,000원

【해운대실버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하 '갑' 은 이용자, '을' 은 제공자, '병' 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을 칭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 '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만,매년 인상되는 수가에 따른 입소비 인상에 관한 계약은 서면통보로 계약서 재작성을 갈음한다.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입소 · 이용료 납부

① '갑'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

④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5.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시설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간식비	당해연도 입소비 안내문에 따름 (별지참조)		
	이/미용료등	.		

※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구분		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권자(0%)
본인 부담 금	1등급				0
	2등급				0
	3~5등급				0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매년 적용 되는 「장기요양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내용에 따른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일반)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감경)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감경)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7.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서비스전 입소자의 산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8.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9. 계약의 해제

1) '갑' 의 해지

①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 의 해지

①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갑'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 은 '갑'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